

서울중앙지방법원 2024. 12. 19 선고 2024가단5408262 판결 [사해행위취소]

전 문

원고A 유한회사

피고B

변론 종결무변론

판결 선고 2024. 12. 19.

주 문

1. 가. 피고와 소외 C 사이에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/11 지분에 관하여 2019. 7. 16. 체결된 상속재산 협의분할 약정을 13,485,254원 한도 내에서 취소한다.

나. 피고는 원고에게 13,485,254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 확정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5%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.
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적용법조

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(무변론판결)

판사정윤주

별지